

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7년 10월 16일 규칙 제613호

일부개정 2013년 5월 27일 규칙 제730호

일부개정 2014년 11월 26일 규칙 제764호

일부개정 2016년 3월 17일 규칙 제78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고필증 재교부) 봉안신고필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6>

제3조(분묘의 규격 등) ① 공설·공동묘지 내 분묘 등의 구조 및 시설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분묘 : 봉분형 또는 평분형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어야 하며,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할 수 있으며 활개는 설치할 수 없다.
 2. 비석 : 가로 45센티미터, 세로 12센티미터, 높이 90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.
 3. 좌반 : 가로 55센티미터, 세로 22센티미터, 높이 12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.
-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.
- ③ 유골함과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설의 사용원칙) ① 공설봉안시설의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, 신규 사용자가 사용후 반환된 봉안단(공실)의 사용을 원할 경우와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11. 26>

② 부부 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,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 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봉안할 수 있다. 다만, 연고자가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도 부부단에 봉안할 수

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있으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<단서신설 2013. 5. 27, 2014. 11. 26>

③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,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시설에 안치할 봉안함은 사용신청자가 구입한다. <개정 2014. 11. 26>

제5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7>

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. 다만, 부부단에 합장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 <신설 2016. 3. 17>

[제목개정 2016. 3. 17]

제6조(유골의 인도)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6>

제7조(관리대장)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·봉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6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③(다른 규칙의 폐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「오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」은 폐지한다.

부칙 <2013. 5. 27 규칙 제73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1. 26 규칙 제76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3. 17 규칙 제78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용료 등 반환 건부터 적용한다.

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[별표] <신설 2016. 3. 17>

사용료 등의 반환(제5조 관련)

1. 사용료

사용기간	1년 이하	2년 이하	3년 이하	4년 이하	5년 이하	5년 초과
환급비율	50%	40%	30%	20%	10%	0%

2. 관리비: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월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
※단,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 시에는 연장시점으로 한다.

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4. 11. 26>

매장 · 봉안관리대장					신고번호
사 망 자	성 명		성 별	남 · 여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		사 망 장 소
	사망일자				사 망 원 인
사 용 권 자	성 명		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		
	전화번호				사망자와의관계
매장분묘		(○○ 공설 · 공동묘지)			
		년 월 일 ~ 년 월 일(년간) (매장일 : 년 월 일)	제 구역 제 호 단장 · 합장		
공설봉안당		년 월 일 ~ 년 월 일(년간) (납골일 : 년 월 일)	제 호실 제 번 개인용, 부부용		
매장 · 봉안안치장소 사진				특기사항	